

제32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2026. 6. 24.(수)



행정복지위원회

- 목 차 -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202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824호
- 제 출 일: 2026년 6월 8일
- 제 출 자: 박주용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6년 6월 18일
- 상정 및 의결: 제32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2026. 6. 19.)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급식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급식종사자의 건강 증진 및 급식 위생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내 급식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2021년 급식실 조리 종사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서 ‘조리흡’의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조리흡이란 고온의 기름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초미세 고체 미립자 물질로, 대규모 급식조리시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호흡기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에, 교육부에서는 2022년부터 급식종사자의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조리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부 소관인 학교급식시설에만 한정되어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시설, 어린이 집 등 달성군 관내의 일반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은 여전히 유해 물질 노출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내 급식시설 전반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방안과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자치사무의 범주으로써, 산업안전 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급식종사자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825호
- 제 출 일: 2026년 6월 8일
- 제 출 자: 이연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6년 6월 18일
- 상정 및 의결: 제32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2026. 6. 19.)

2. 제안사유

-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민원 상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사항 구체화(안 제7조)
- 민원 상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조항 신설
(안 제8조의2)

4.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방안 지침’ 개정에 맞추어, 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상담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시함입니다.
-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가 2024년 10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원별 특성을 고려한 권장 시간 설정 및 폭언시 상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사항에서 ▲전화 또는 면담 시 1회당 권장 시간 설정, ▲반복·지속적인 욕설·협박·성희롱 발생 시 상담 종료 안내 후 즉시 종결됨을 자치법규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기본법」 제8조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최근 강화된 국가적 안전대책을 자치법규에 충실히 반영한 적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검토결과, 최근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업무 기피 및 공직사회 위축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상위법령의 취지와도 적극 부합하는 점, 궁극적으로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한 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827호
- 제 출 일: 2026년 6월 8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6년 6월 18일
- 상정 및 의결: 제32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2026. 6. 19.)

2. 제안사유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민간 위탁 사무 처리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신설(안 제5조제3항)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안 제5조의2)
-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을 신설(안 제8조제3항)
- 수탁자의 제3자 재위탁 관련 규정을 신설(안 제11조의2)
-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라는 불명확한 표현의 협약 해지 사유 규정을 삭제(안 제16조제1항제4호)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성군이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 읍부즈만’ 이 지자체 자치법규 내 불평등하거나 자의적인 규제·애로사항에 대해 정비 요청을 지속해 온 취지를 반영한 개정 조치로 판단됩니다.

-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의 사전 공개(안 제5조제3항) 및 이의신청제도 도입(안 제5조의2)과 관련하여 본 조례의 목적은 군수의 권한 사무 중 일부를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공공사무의 위탁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검증하고자 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기간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과 배점 등을 공개하고, 선정 결과에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진행되는 절차와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절차 과정의 갈등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이후 협약체결사항을 공개(제8조제3항)하여 행정절차의 신뢰도를 한단계 높이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제3자 재위탁 금지(안 제11조의2) 조문을 신설하여 달성군과 위탁한 기관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임의로 재위탁 할 수 없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본질을 지키고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불명확한 협약해지 사유를 삭제(안 제16조제1항제4호 삭제)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의 규정되어 있던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불확정 표현’을 삭제하여 민간 수탁업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제고한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적으로도 매우 적절한 정비입니다.

- 종합적인 검토결과 민간위탁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완하고, 불명확한 표현을 삭제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개정한 바,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828호
- 제 출 일: 2026년 6월 8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6년 6월 18일
- 상정 및 의결: 제32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2026. 6. 19.)

2. 제안사유

- 친환경 목조전망대 신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1건당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및 기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비슬산과 낙동강의 조망권 확보가 용이한 지점에 친환경 목조전망대를 건립하여, 대구의 상징적 관광 거점 및 랜드마크로 육성하고자 함.
 - 목재 활용 건축을 통해 정부의 탄소 중립 및 저감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민 체감형 목재 문화 향유 공간을 조성하여 친환경 가치를 확산하고자 함.
 - 도깨비시장, 도동서원, 송해공원, 비슬산 등 지역 관광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관광 벨트'를 구축하여 연간 1,000만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친환경 목조전망대 신축안

- 사업명 : 친환경 목조전망대 신축
- 위치 : 현풍읍 성하리 378 (하동근린공원 內)
- 규모 : 지상 3층, 건축면적 1,021㎡, 연면적 1,353㎡
- 사업기간 : 2026. 6. ~ 2027. 12.
- 주요시설

층 수	면 적(㎡)	내 부 시 설
3층	270	스카이워크 전망대
2층	325	전시실
1층	758	기계실, 휴게라운지, 사무실, 도서관 등
총계	1,353	

- 총사업비 : 130억 원 (국비 65, 시비 2, 군비 63)
- 공사비 120억 원, 설계비 10억 원

※ 기준가격(대장가격)

- 전망대 신축(사업비) : 13,000,000,000원

- 추진상황
 - 2024. 5. ~ 11. :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 2025. 3. : 사업 추진방침 수립
 - 2025. 4. ~ 5. : 지방재정 투자심사
 - 2025. 3. ~ 11. : 건축기획 용역 추진
 - 2025. 10. ~ 12. : 건축설계 공모

- 2025. 12. ~ 2026. 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6. 3. : 주민설명회 개최
- 2026. 4. ~ 10. : 사업구역 내 분묘 이장
- 향후 추진계획
 - 2026. 6.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6. 6. ~ 7.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026. 10. ~ 2027. 12. : 착공 및 준공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2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시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 친환경 목조전망대 신축건은 대구 남부권의 상징적 관광 거점 마련 및 국산 목재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시책 동참을 목적으로 제출된 건으로서, 현풍읍 성하리 378번지(하동근린공원 내)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1,353㎡ 규모의 친환경 목조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30억 원(국비 65억, 시비 2억, 군비 63억)이 투입되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매칭사업입니다.

- 내부 시설로는 1층 휴게라운지 및 도서관, 2층 전시실, 3층 스카이워크 전망대 등을 계획중에 있으며, 주변 비슬산 및 낙동강 조망권을 활용하여 주민 체감형 친환경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달성군 관내 관광 자원(현풍백년도깨비시장, 도동서원, 송해공원, 비슬산 등)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사업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25년 4월) 및 주민설명회 (26년 3월), 민원 예방(구역 내 분묘이장) 등을 통해 사업진행에 있어 사전적인 준비를 단계별로 이행해 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노후된 부지를 랜드마크화 하여 미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공공의 목적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공원 기능의 유지와 동 시간대 개발되는 인근 사업들과의 조화를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